

전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84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849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4 선고 2019가단75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경한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4. 선고 2019가단75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C의 증언)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가사 피고에게 현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하였거나, 법률적으로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